

## 채널 A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제 1 항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항 (자격) 고충처리인은 방송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시청자 권익보호에 대한 의식을 갖춘 인사를 임명한다. 사내 인사의 경우 차장급 이상이어야 하며 외부 인사인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제 3 항 (임기) 임기는 1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일인이 연임 시 별도 연임 임명하지 않는다.

제 4 항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보도로 인한 피해 여부 조사,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에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제 5 항 (신분 및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제 6 항 (임명) 고충처리인은 대표이사가 임명한다.